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351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소득세 일반(근로소득, 종합소득등) 분야>	4
1.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정부안)	4
2.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20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30
4.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정부안)	39
5.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확대(정부안)	41
6.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49
7.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보완	53
가. 개요	53
나.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유예(정부안, 송언석의원안)	56
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63
라.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정부안, 정태호의원안)	67
8.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73
9.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77
10.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신영대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송언석의원안, 정태호의원안)	81
11.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정비(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91
12.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정태호의원안, 정부안)	93

13.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100
14.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103
15.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 축소(정부안, 정태호의원안)	109
1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120
17.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123
 <양도소득세 분야>	126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정부안)	126
2.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정태호의원안, 정부안)	131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136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136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5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II. 주요 내용별 검토

<소득세 일반(근로소득, 종합소득등) 분야>

1.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정부안)

현 행	정부안
☐ 배당소득(제17조)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증권(사채)로부터의 이익 <u><신 설></u> <u><신 설></u>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금전 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u>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u>
☐ 소득의 구분(제4조)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원칙: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도관과세) - 예외: ①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 ② <u>투자신탁(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한정)</u> ③ <u>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u> <u><신 설></u>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에 포함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원칙: (현행과 같음) -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u>적격 집합투자기구</u>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따른 문구 수정 ③ (현행과 같음) ④ <u>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u>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재산권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분할하여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이익을 불특정 다수가 투자·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이른바 “조각투자상품”)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을 신탁의 이익 원천에 따른 도관(導管, pass-through entity)과세 예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최근 부동산, 음악저작권, 한우, 미술품 등에 대한 권리를 증권 형태로 분할하여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각투자의 활성화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아트테크 등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해 수용적이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개방적인 세대의 투자 확대와 분산원장 기술¹⁾(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의 등장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현재 조각투자상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부분 토큰증권의 형태로 발행·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는

1)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로,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함. 이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음. 분산원장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blockchain)임(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²⁾이나 투자계약증권³⁾의 유통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분류를 논의하기에 앞서 ①조각투자가 활성화되게 된 배경인 토큰증권의 개념과, 조각투자상품의 발행구조인 ②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및 ③투자계약증권의 정의, 관련 규제 및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⁴⁾으로서, 기존의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형태에 해당함.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실물자산을 분할하고 자금조

2) 타인에게 비금전적인 재산의 운용을 맡겨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 부동산이나 음원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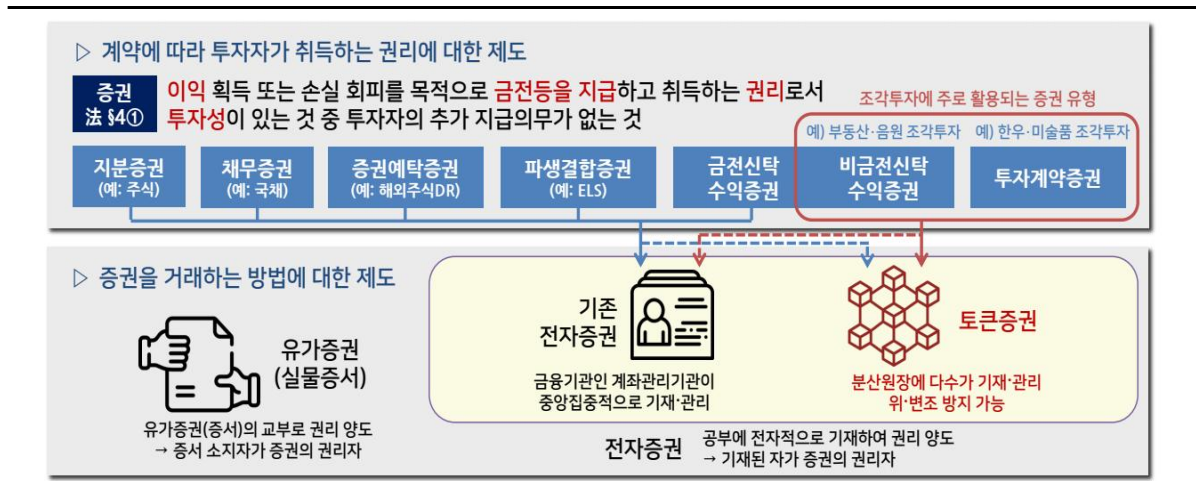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달 관련 비용을 절감하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큰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조각투자상품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증가하였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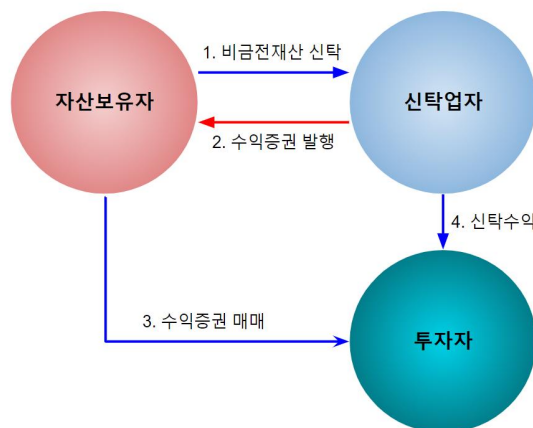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개념]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②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란 비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함.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통한 자산 유동화]



자료: 금융위원회

5)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토큰증권 발행) 시장 전망, 삼일PwC연구원, 2024. 6.

수익증권이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고 그 신탁재산을 상환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하는데⁶⁾,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 금전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신탁만 인정하고 있어⁷⁾ 현행법상 비금전신탁 수익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여, 현재 부동산 및 음악저작권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자체 거래 플랫폼 을 활용한 투자자 간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⁸⁾.

6) 이상복, 「자본시장법」, 2021., p.152.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약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약증권

③·④ (생략)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운영 현황]

구분	카사	루센트블록	편블	뮤직카우
서비스 내용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음원저작권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자산	부동산			저작권재산권등
자산 보유자	부동산 원소유자			저작권 매입법인
지정일	2019.12.18.	2021.4.14.	2021.5.26.	2022.9.7.
서비스 출시여 부	○	○	○	○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9월말 기준)

다음으로 ③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말함⁹⁾.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달리 「자본시장법」에 정의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제2편 제5장), 발행공시규정(제3편 제1장)과 부정거래행위규정 중 일부(제178조 및 제179조) 등 제한적인 범위에 한하여 「자본시장법」 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달리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지정받지 않아 발행 및 투자(매입)만 가능하고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간 거래 등 유통은 불가능함.

□ 현재 부동산과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재산과 사업자의 도산위험을 절연하기 위하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구조로 발행·유통되고 있는 반면,

미술품과 한우는 각각 수장고 등 안전한 보관장소와 축사와 같은 사육공간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보관·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탁사는 금전신탁 경험만 있을 뿐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여 신탁 수익증권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음¹⁰⁾.

투자자는 공모, 청약 등을 거쳐 조각투자상품(증권)을 매입한 이후 기초자산의 매각 등에 따른 처분이익이나 기초자산의 대여 등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증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시세차익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유사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납세자가 기초자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행정청의 해석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초자산별로 소득분류가 상이하

10) 대체투자: STO ②: 새로운 금융, 토큰증권, 삼성증권, 2024. 3.

게 적용되고 있음.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현황]

조각투자사업자	기초자산	소유권 여부	구조	소득분류(세율)
카사코리아	부동산	X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배당소득(14%)
루센트블록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기타소득(20%) → 배당소득(14%, '23.6월)
테사	미술품	○ (공유지분)	투자계약증권	기타소득(20%)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스탁키퍼	한우			사업소득(3%)

자료: 기획재정부

□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배당금 등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으로서의 특성이 아닌 기초자산의 소득분류에 의거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수익, 매각차익 및 자체 플랫폼 내 거래를 통한 증권의 시세차익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

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DABS)에 투자하고 받는 분배·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¹¹⁾, 현재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의 경우 당초 증권선물위원회는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매달 투자자에게 정산되는 저작권료와 저작권을 양도하여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인 저작인접권의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사업재편 조건 요구에 따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사업자는 사업구조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였고,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한편,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소유권(공유지분)과 함께 사육·매각·손익 배분(한우) 또는 보관·관리·매각·손익 배분(미술품)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¹²⁾에 부합하여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됨.

1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05.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2020. 6.18.

12)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

미술품은 일반적인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소득세법」 상 소득분류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 중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고 있고,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 축산업으로서 농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 세율이 적용됨¹³⁾.

□ 개정안은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하는 증권으로서 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¹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법률상 과세기준이 불명확했던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편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22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방안」, 2023년 2

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13) 단, 조각투자자는 농·어민이 아니므로 한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도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또한, 한우 조각투자상품인 벵카우의 경우 2024년부터 한우 1마리에 대한 투자가 아닌 여러 마리의 한우를 묶어 가축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사업손익 또는 증권의 양도로 인한 매매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밝힘.

1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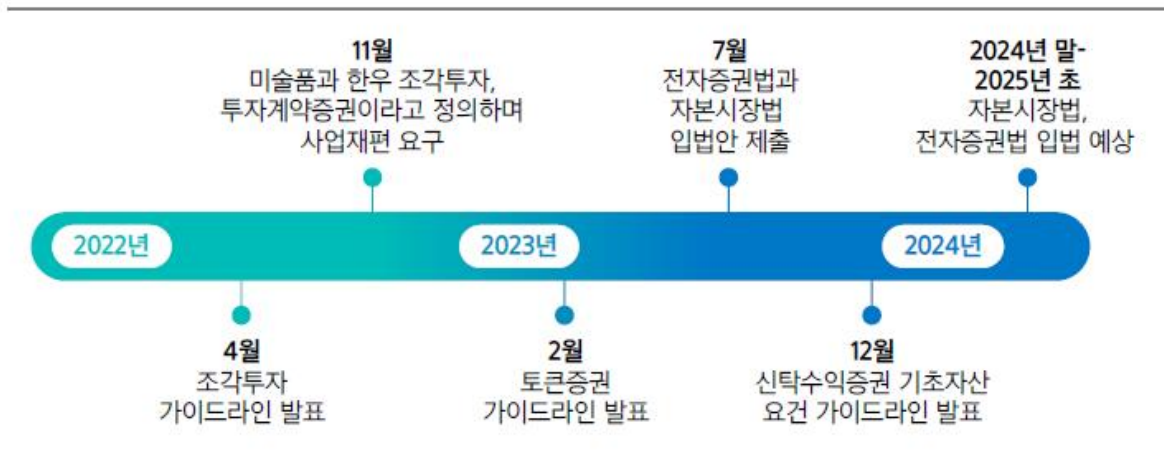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 4. (생략)

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년 1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음¹⁵⁾.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관련 연혁]



자료: 삼성증권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발행형태인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¹⁶⁾,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판매·유통 근거를 마련하여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면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 때 발의된 바

15) 현행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허용되지만,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16) 제21대 국회: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호, 2123533호), 제22대 국회: 김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호 2204921호)

있음¹⁷⁾.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한국거래소(KRX)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¹⁸⁾을 활용한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상품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024년 10월말 기준 서비스 개시를 준비중임.

이러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유통시장 개설 준비와 함께 통일적인 과세체계 기준까지 확립함으로써 완결성 있는 조각투자상품 제도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조각투자상품의 과세방식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분류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상품의 경우 기타소득(20%)에서 배당소득(14%)으로 소득분류가 달라지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많음.

또한, 추후 새로운 기초자산에 근거한 조각투자상품이 출시되었을

17) 제21대 국회: 김희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44호)

18) 단, 장내시장에는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이 가능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하고, 발행인은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한국거래소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였음.

때 해당 기초자산의 성격, 신탁여부 및 증권의 종류 등에 따라 소득분류와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따라서 기초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근거한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은 투자자 및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특정 구조를 촉진할 정책적 실익이 없어 소득구분이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나 다른 유사한 투자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행법상 일반적인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의 경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양도차익의 80~90%로 계산하고 있음¹⁹⁾.

19)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에 따른 수익 역시 일반적인 미술품 양도와 동일하게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미술품 투자와 달리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협회는 미술품을 직접 투자하는 고액자산가에 비해 조각투자의 형태로 투자하는 일반 대중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세부담 심화로 인해 조각투자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일반적인 미술품 매매와 동일하게 미술품 조각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투자할 경우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공모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²⁰⁾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 2. (생략)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익은 비과세 대상이고, 3년 이상 투자시 5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²¹⁾).

둘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세제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유예·폐지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²²⁾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20)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를 의미함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2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득”은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반면,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의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포괄적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세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익의 소득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경우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은 소득의 내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신탁의 이익 원천에 따른 도관과세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임.

문 의 처
02)6788-5154

2.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제12조제3 호머목) ☐ 근로자 또 는 배우자 의 출산이 나 6세 이 하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 용 자 로 부 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신 설>	☐ 기업의 출 산 관련 지 원금 비과 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 육과 관련 하여 사용 자 로 부 터 받는 급여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 는 그 배 우자의 출 산과 관련 하여 출산 후 3년 안 에 사용자 로부터 받 는 급여	☐ 기업의 출 산 관련 지 원금 비과 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 육과 관련 하여 사용 자 로 부 터 받는 급여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 는 그 배 우자의 출 산과 관련 하여 사용 자 로 부 터 받는 대통 령 령 으 로 정하는 급 여	☐ 기업의 출 산 관련 지 원금 비과 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 육과 관련 하여 사용 자 로 부 터 받는 급여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 는 그 배 우자의 출 산과 관련 하여 사용 자 로 부 터 받는 급여	☐ 기업의 출 산 관련 지 원금 비과 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 육과 관련 하여 사용 자 로 부 터 받는 급여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 는 그 배 우자의 출 산과 관련 하여 자녀 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 자 로 부 터 최대 2회 에 걸쳐 지 급 받 는 급여 전액 * 단, 2021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2024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률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 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 받은 급여는 제외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4. 6. 12. 제출(의안번호 362), 정성호의원안 2024. 6. 13. 제출(의안번호 442),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5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전액”을, 정성호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윤호중의원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각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일영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은 종교관련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유지되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비과세 한도	현행	정일영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출산 관련 급여	월 20만원	<u>급여 전액</u> (출산 후 3년)	<u>대통령령</u> <u>으로</u> <u>정하는</u> <u>급여</u>	<u>급여 전액</u>	<u>급여 전액</u> (출생 후 2년, 자녀당 최대 2회)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월 20만원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²³⁾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²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3)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4)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원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00기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퇴색되고 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종합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에 따른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구매력과 담세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근로소

득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낮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와 높은 종합소득세율(6%~45%) 회피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1억원 이하 10%)를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용자가 조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출산한 근로자에게 보수의 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변형된 형태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유인이 크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이 적합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47만 2,38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2.3%에 불과하였고 1인당 평균 비과세분 신고액도 67만 9,000원으로 전체 한도액 120만원²⁵⁾의 56.6%에 불과하였음²⁶⁾.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한 기업 중 500인 초과 기업은 56%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기업 비중은 18%에 불과함.

25) 2022년에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한도가 연 120만원(월 10만원)이었음

26) 국세통계포털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이처럼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현행 비과세 한도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²⁷⁾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고연봉자 등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둘째,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음.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 요건과 한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낮은 합계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른 세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7) 저소득 면세자는 2022년 33.6%로 조사됨(귀속연도 기준)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2021) 35.3%

셋째,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대체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면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은 전액 과세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급여는 연 240만원까지, 급식수당은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함²⁸⁾.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한(2년) 및 횟수 제한(2회) 외에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받은 장려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

28)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하고 있어, 현행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세청은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넷째, 비과세 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감면 규모의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는 2022년 연간 신생아 수와 2021년 대기업 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정부안에 따른 세수감 효과가 연 평균 32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일영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에 대하여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인원수 및 1인당 추가적인 급여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비과세 한도를 특정하지 않고 출산 관련 급여 전액으로 확대할 경우 출산급여의 비과세 정도를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세수감면 규모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별 비용추계 결과 비교]

추계주체	추계대상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 평균
정부	정부안	△329	△329	△329	△329	△329	△1,645	△329

추계주체	추계대상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 평균
국회 예산정책처	정일영의원안	세수효과 추계 곤란 (출산에 따라 추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인원수 및 1인당 추가 급여액 추정 곤란)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문 의 처

02)6788-5154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 근로소득의 범위(제20조) ☐ <신 설>	☐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경우 해당 할인금액 ※ 시행령(정부안) : 시가=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물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 <신 설>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 마련 ☐ 비과세 요건: - 자기소비 목적으로 구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비과세 한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시행령(정부안) : Max(시가의 20%, 240만원) -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천하람의원안)

* 정부안 2024. 9. 2. 제출 (의안번호 36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천하람의원안 2024. 10. 30. 제출(의안번호 5071)

☐ 3건의 개정안은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 과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천하람의원안은 특정 요건 충족 시 할인금액 전액을 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면서, 공로금·위로금·장학금, 급식수당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²⁹⁾.

다만 저금리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비용지원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⁰⁾.

29)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확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0)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 라.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가. 나. (생략)
-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현재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세유형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의 종업원 할인혜택이 구매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음³¹⁾.

□ 이에 개정안은 종업원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복리후생적 성격을 고려하여 자기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또는 할인금액 전액(천하람의원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지급형태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이하 생략)

31) 다만,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비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의료기관 할인서비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³²⁾.

종업원 할인혜택은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며, 종업원이 본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현재 종업원이 자사 제품 구입을 희망하면 기업이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반면,

종업원이 자사 재화 또는 서비스(항공권, 자동차, 전자제품 등)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판매가격과의 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 등 일선 현장에서 개별 사안마다 신고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다른 복지제도와 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2)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4

기업이 구매지원금 형태로 종업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모두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자동차 등 자사 제품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일정 수준을 초과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개정안은 종업원 할인이익 중 일정 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³³⁾ 종업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재화를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필요 이상으로 기업의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타사 제품 할인이나 퇴직자 할인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기준을 마련하면서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이 자사 제품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3)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비과세 한도 설정, 천하람의원안은 비과세 한도 미설정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타사 제품을
본사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거나 퇴직자에게 할인혜택을 부
여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개정안은 선결조건인 근로행위가 없었더라면 할인 역시 적용되
지 않았을 것이므로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타사 제품의 할인제공은 본사 제
품의 할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퇴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전의 근로사실을 전제로
할인혜택이 부여된 것이므로 해당 할인금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
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
지하는 헌법상 원칙으로³⁴⁾,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
로 규정된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34)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³⁵⁾.

위 2건의 개정안은 비과세 기준 중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비과세 한도와 재판매 금지기간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셋째,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획재정부는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대상 금액을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더 큰 값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³⁶⁾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20%를 정상적인 할인금액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것으로, 식사대, 출산·양육수당 등 다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적용되는 비과세한도 수준³⁷⁾을 고려하여 24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임.

35) 헌법재판소 2006.4.27 2004 헌가 19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36) 2018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음.
(건설) 13.39 (전자) 16.47 (화학) 21.99 (제약) 38.99 (자동차) 11.43

37) 사내급식 등 식사대, 출산·보육 관련 급여, 공무원 상급·부상 등의 비과세한도는 연 240만원임.

[해외 주요국의 직원할인 관련 소득세제 현황(2022년 기준)]

국가	주요내용
미국	제품: 할인액이 정상판매 매출총이익률 ³⁸⁾ 초과시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서비스: 할인액이 정상가격의 20% 초과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일본	할인액이 시가의 30% 초과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영국	할인판매가격이 중고가치 미만 → 미달분 근로소득 과세
독일	할인액*이 연간 1,080 유로 초과 →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 할인액 = (시가 × 96%) - 할인판매가격
싱가폴	할인판매가격이 \$500 초과 → 할인액 전체 근로소득 과세

*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천하람의원안은 자기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자사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재판매하지 않을 경우 할인금액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적용 요건과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종업원 할인제도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실질적 구매력 및 담세력을 증가시키는바, 소비의 목적 또는 재판매 기간 등과 상관없이 높은 담세력이 있는 자는 낮은 담세력을 갖는 자에 비하여 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수직적 공평 측면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종

38) 매출총이익률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업원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광범위한 비과세는 세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통상적인 금전 형태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 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은 비과세 요건으로 ① 자기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것과 ② 일정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4.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정부안)

현행	정부안
☐ 의제배당(제17조제2항) ○ 합병시 의제배당: (① - ②) 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 법인 또는 합병 신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u>주식·출자가액과 금전의 합계액</u> ②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합병대가 의미 명확화 ○ 합병시 의제배당: (① - ②) 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 법인 또는 합병 신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u>주식·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u> ②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합병대가의 합계액을 현행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에서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의제배당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회사가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 또는 주식을 지급·교부하지 않았지만 주식의 소각, 법인의 해산·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 분배금 등과의 과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함. 현행법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대가의 합계액에서 소멸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합병대가에 주식, 출자, 금전 외에 사채, 유가증권, 부동산

산 등 “그 밖의 재산가액”을 추가로 규정하여 합병대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법」에 따른 흡수합병·신설합병에 따른 합병대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등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	조문내용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u>그 밖의 재산</u>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u>그 밖의 재산</u>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u>그 밖의 재산가액</u> 의 합계액 2. 분할대가: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u>그 밖의 재산가액</u> 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154

5.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확대(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17조제3항) ○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 합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frac{9\%}{1-9\%} \approx 9.9\%$) ○ 배당소득가산 대상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 자기주식 등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신 설>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u> - <u>「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u> - <u>적격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u> - <u>적격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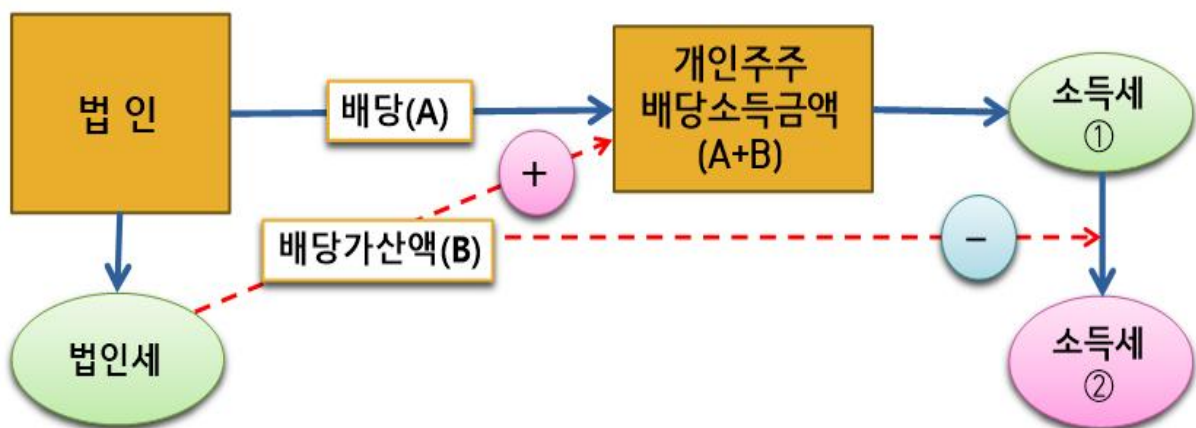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과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을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³⁹⁾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본 제도는 “특정 주주의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 차원의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후 이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해당 주주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Gross-up)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39)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한하며, 구체적으로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및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의미함.

□ “배당가산액”이란 주주가 배당받은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액을 의미하는데, 주주에 대한 배당은 법인의 순이익 중 법인세를 제하고 남은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 특정 주주의 배당소득에 $[1/(1-\text{법인세율})]$ 을 곱하여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역산하고, ② 이에 법인세율을 곱함으로써 법인세 중 해당 주주의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배당가산액 계산식]

$$\left[\text{배당소득(A)} \times \frac{1}{(1 - \text{법인세율})} \right] \times \text{법인세율}$$

배당가산액 계산 시 가장 낮은 법인세율 수준이자 가장 많은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인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⁴⁰⁾, 2022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하였고,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시 인화된 최저 법인세율 9%를 적용하여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조정하였음.

□ 개정안은 ①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② 적격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차익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중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③ 유상감자 시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을 배당가산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한 배당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

40) 이중과세의 완전조정을 위해서는 실효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효법인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장 많은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법인 중 88%에 최저세율이 적용됨.

□ 먼저 ①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에 추가하는 부분을 논의함에 앞서, 먼저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평가적립금이란 법인이 토지 등 고정자산을 재평가⁴¹⁾를 한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고, 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받는 적립금과 3%의 세율을 적용받는 적립금으로 구분됨⁴²⁾.

또한,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당 등을 통해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41)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함

42)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3)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항⁴⁴⁾에 따르면 1%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의제 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만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의제 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이로 인해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재평가적립금은 성격상 납입자본이 아닌 평가차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바,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다만,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

4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하게 되는데, 3% 재평가적립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법인단체에서 과세되지 않음⁴⁵⁾).

따라서 이를 감액하여 배당받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② 적격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차익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중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중과세 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⁴⁶⁾」에 따르면 적격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따른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해당 차익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⁴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익에 포함된 피합

45)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1% 재평가적립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7)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래의 성격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준비금으로서 감액배당 시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정부는 적격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이 경우에도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이를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겠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③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⁴⁸⁾의 경우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⁴⁹⁾, 특정 주주의 경우 반환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대가를 받게 된다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⁵⁰⁾.

48) 감자차익이란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함.

49)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填)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0)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을 이중과세 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함.

□ 참고로 2023년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익금불산입(주주단계)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⁵¹⁾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 등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본 개정안은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이중과세 조정대상 배당이 일치하도록 동일한 내용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취지임.

문 의 처

02)6788-5154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1)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은 내국법인인 주주단계에서 익금불산입함으로써 법인-법인주주 2단계에 걸쳐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려는 제도에 해당함

6.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제33조) ○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벌금, 과료, 과태료 ○ 가산금, 강제징수비 ○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u>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을 이유로</u> 부과되는 공과금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중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지만⁵²⁾, 세금 또는 공과금 등을 부과한 목적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⁵²⁾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않도록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①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② 벌금, 과료, 과태료, ③ 가산금, 강제징수비, ④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⑥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등 일부 세금과 공과금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이 중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그 필요경비가 반영된 소득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가 나타나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안은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뿐만 아니라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과금 부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규정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을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중 제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과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21조⁵³⁾는 「소득세법」 제33조와 동일하게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⁵⁴⁾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였으나⁵⁵⁾,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⁵⁶⁾.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위 판결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하였음⁵⁷⁾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과금은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업경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반을 이유 부과된 공과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경우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공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적

53)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5) 법인세제과-145, 2018. 2. 21.

56)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2023. 12. 5. 선고

57) 조심 2024서0747, 2024. 4. 3.

목적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본 개정안과 동일한 입법취지 하에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3526)」을 제출하였는바 2개 개정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7.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보완

가. 개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함⁵⁸⁾.

「소득세법」(법률 제19563호,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가상자산 과세 여부 결정 및 시행 시기와 관련한 연혁을 살펴보면, 2020년 제382회 국회(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분류 및 과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먼저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분류와 관련하여 당시 양도소득으로 과

5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⁵⁹⁾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⁶⁰⁾을 병합심사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 외에 ‘대여’로 인한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는 점, 「소득세법」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⁶¹⁾, 국제기구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점⁶²⁾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의결하였음.

다음으로 과세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2020년 가상자산 과세 입법화 과정에서 과세 공백 최소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등을 이유로 조속히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과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간 및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시작일⁶³⁾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⁶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하였음.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의안번호 1676)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0. 8. 31. 의안번호 3324)

6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62) 관련 설명은 본문 뒷부분 참조

자료 : The June 2019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Update, 2019. 6.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19/06/june-2019-ific-update-published>

6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64)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2020.11.) 및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0.11.12., pp. 37~49

이후 2021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세 시작일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고(1차 유예⁶⁵⁾),

2022년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루나·테라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과세 시행 이전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⁶⁶⁾ 과세 시행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또 한번 연기하였음(2차 유예⁶⁷⁾).

□ 한편,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중임.

65) 시스템을 더욱 충분하게 정비하고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와 교육들을 충분히 진행한 이후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1.11.24. pp. 83~91)

66)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67) 「디지털자산 기본법」(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2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2.11.22.. pp. 23~27)

나.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유예(정부안, 송언석의원안)

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정부안	송언석의원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 ○ 시행시기: 2025. 1. 1.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2년 유예 ○ 과세대상: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소득구분: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과세방법: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신고·납부: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시행시기: 2027. 1. 1.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3년 유예 ○ 과세대상: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소득구분: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과세방법: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신고·납부: (법률 제 17757호와 같음) ○ 시행시기: 2028. 1. 1.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송언석의원안 2024. 9. 26. 제출(의안번호 4341)

☐ 2건의 개정안은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유예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이고, 송언석의원안은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려는 것임.

☐ 2022년 2차 과세 유예 결정 시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하락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인하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거래금액 등이 크게 축소되었음.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들어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및 거래소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2023년 하반기에는 거래규모, 시가총액은 물론이고 상반기 하락세였던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도 다시 증가하였음.

2024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⁶⁸⁾하는 등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졌고, 2024년 6월 기준 국내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3조원으로 2023년말(43.6조원)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거래규모는 1,087조원으로 2023년 하반기 대비 67% 증가하였음.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2년 上	'22년 下	'23년 上	'23년 下	'24년 上
일평균 거래규모	5.3조원	2.9조원	2.9조원	3.6조원	6.0조원
총영업이익	0.63조원	0.13조원	0.23조원	0.27조원	0.59조원
시가총액	23조원	19조원	28조원	44조원	55.3조원
가격변동성	73%	67%	62%	62%	70%
거래가능 이용자	690만명	627만명	606만명	645만명	778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 및 거래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유예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필요성이 주장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첫째,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

68) 2024년 3월 14일 73,797.97달러

한 법률」의 시행 성과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거쳐 투자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한 이후 과세를 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속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감시체계 부재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 하에,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이용자 자산 보호	①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하여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함 ②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③ 거래기록의 보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이후 15년간 보존하여야 함
불공정거래 규제	①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주요주주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처벌 ② 시세조종 금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짝 후 매매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구 분	주요 내용
감독 및 제재	① 감독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 검사 - 금융위원회: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② 제재 - 불공정거래행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5배 상당 벌금

정부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 등이 포함된 위 법률을 기반으로 금융당국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⁶⁹⁾하고 검찰·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추진체계가 일부 마련되었지만, 법률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이후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 원활한 가상자산 과세 및 투자자의 납세준응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임.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세 시행이 두 차례 연기되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2027년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개시될

69)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9명),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17명)

예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되어 현행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체계⁷⁰) 하에서 거래 정보가 수집·교환되지 않아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022년 8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재정위원회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승인하였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하였음.

2023년 11월 우리나라, 미국, 호주 등 48개 국가는 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하여 2027년 정보교환 개시 일정에 맞추어 각국 법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환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며, 조세 피난처를 없애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CARF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음.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 현행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에 암호화자산 정보를 추가하는 등 CARF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⁷¹」을 제출하였음.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가간 정보 교환이 개시된 이후에 가상자산

70)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거주자 금융정보를 가입국 과세당국 간 상호교환

7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4. 9. 2., 의안번호 3523)

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면 거주자의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 등을 바탕으로 보다 원활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예의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최초 2022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정비 및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고, 이후 시장 여건 및 투자자 보호체계 법제화 등을 이유로 과세 시행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또 한번 연기하였음.

2022년 제400회 국회(정기회) 조세소위원회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가상자산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2023년에 이익을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 과세를 다시 한번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⁷²⁾.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두 차례 연기된 과세 시행시점을 또 한번 추가로 유예하게 되는데, 시황 등에 의존하여 과세여부를 계속하여 번복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72)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2.11.22.. p. 26

또한, 현행법상 사행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심지어 뇌물 등 불법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점⁷³⁾을 감안할 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조속한 과세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주요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현황]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세율	0%~37% (수익금 47,026달러 미만이고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0%~20%	30%	0%~45% (금액 관계없이 1년 이상보유 시 비과세)	5~45%

주 : 프랑스의 경우 함께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율을 포함

문 의 처

02)6788-5154

7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제37조) ○ 원칙: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 <u>부대비용</u> - <u>2025년</u>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u>2024년</u>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에서 큰 금액 ○ 예외: <신 설>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 원칙: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 <u>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u> - <u>2027년</u>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u>2026년</u>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에서 큰 금액 ○ 예외: - 조건: <u>2027년</u>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산방식: 필요경비=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0% 한도)을 곱한 금액 *별도의 부대비용 불 인정 ○ 시행일: 필요경비 계산원칙: (2027년 1월 1일) 취득가액 예외: (2027년 1월 1일)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 원칙: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 <u>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u> - (법률 제17757호와 같음) ○ 예외: - 조건: <u>2025년</u>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산방식: 필요경비=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0% 한도)을 곱한 금액 *별도의 부대비용 불 인정 ○ 시행일: 필요경비 계산원칙: (2027년 1월 1일) 취득가액 예외: (2025년 1월 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50% 한도)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의 2년 추가 유예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정태호의원안은 법률 제17757호에 따라 2025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예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⁷⁴⁾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국외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에 따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함.

- 개정안은 대량매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가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동종 가상자산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예정)」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2025. 1. 1.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3518호)」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2027. 1. 1.부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계산(概算) 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양도가액 대비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최대 5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⁷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임⁷⁶⁾.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납세 협력비용 완화 측면에서 필요경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필요경비 의제의 조건과 적용 비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임 내용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및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예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76) 과세대상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양도가액의 최대 50%) ≥ 양도가액의 50%

세액 = 과세대상소득 * 분리과세 세율(20%) ≥ 양도가액의 10% = 비거주자 부담 세액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준수를 위해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정태호의원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식과 관련한 안 제37조제1항제3호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라.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제164조의4 및 제177조) ○ 의무부과대상: 「<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거래분부터 적용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 제출시기: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미제출 시 제재: <신 설>	□ 거래내역 제출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및 제재 신설 ○ 의무부과대상: 「<u>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거래분부터 적용 ○ 제출자료: (법률 제17757호와 같음) ○ 제출시기: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미제출 시 제재: <u>시정명령(국세청장) 및 시정명령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u> *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거래분부터 적용 ○ 시행일: - 자료제출의무: 2027년 1월 1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8년 1월 1일	□ 거래내역 제출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및 제재 신설 ○ 의무부과대상: 「<u>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거래분부터 적용 ○ 제출자료: (법률 제17757호와 같음) ○ 제출시기: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미제출 시 제재: <u>시정명령(국세청장) 및 시정명령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u>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거래분부터 적용 ○ 시행일: - 자료제출의무: 2027년 1월 1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6년 1월 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하고, ② 국세청장에게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 미이행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의 2년 추가 유예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정태호의원안은 법률 제17757호에 따라 2025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가상자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활한 소득세 부과·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예정)」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주체를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⁷⁷⁾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

⁷⁷⁾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한 사업자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⁷⁸⁾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종료 이후 15년간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⁷⁹⁾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보완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7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7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거래자료 제출을 유도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6.0조원 수준이고 거래가 능이용자가 778만명에 달하는 등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적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역외 탈세 등 탈루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효율적 과세 및 탈세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와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은 개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비하여 연간 약 80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자료의 누적·통합 관리를 위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개요]



자료: 국세청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검증·세무조

사 등을 위해서는 거래자료 제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 예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 과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는 마련하고 있는 반면 거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아 거짓 자료 제출의 유인이 적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자료의 의도적 누락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법⁸⁰⁾」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80)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겠음.

- 한편, 정태호의원안은 2025년 1월 1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전제로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 164조의4제1항의 시행일을 과세 시행일에 맞추어 2027년 1월 1일이 아닌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8.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기본공제(제50조) ○ 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사람 수 × 1명당 연 150만원 ○ 기본공제 대상 - 거주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의 부양가족 가.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u>20세 이하</u>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아동 ○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한정	☐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대상 - 거주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의 부양가족 가.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u>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u>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아동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나이요건이 ‘20세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어, 만 20세가 지났으나 만 21세가 되기 전인 사람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20세 이하’에 대하여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⁸¹⁾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나이 요건을 각각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에서는 동 규정상 ‘20세 이하’의 의미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해석⁸²⁾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를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공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만 나이를 20세라고 일컫고 있어, 만 20세가 되는 시점이 지난 경우에도 만 21세가 되기 전 시점까지는 동 규정상의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가령, 2002년 5월 30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날은 2022년 5월 30일로(C),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기간(A)에는 이미 만 20세가 된 날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9일까지는 만 20세로 생각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B)가 있다는 것임.

81) 「소득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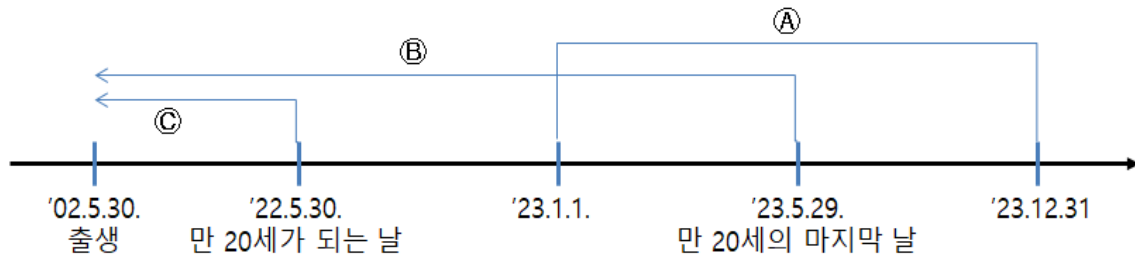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82) 「법제처22-0472」(2022.09.14.)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에 개정안은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으로서 ‘20세 이하’가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오인 가능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뿐만 아니라, 같은 법 다른 규정⁸³⁾의 적용, 그리고 나이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세법 및 세법 외의 법령 운용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동 규정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참고로, 「행정기본법」⁸⁴⁾에서 행정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84)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61

9.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제56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신규사업 개시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현행과 같음)
○ 공제방식: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63조⁸⁵⁾는 사업자등록⁸⁶⁾을 한 사업자는 재화

85)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중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이와 함께, 전자계산서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그 명세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인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전자계산서 발급 제도는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거래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6)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입되어, 2014년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음.

또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의무대상자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 12월 31일에 동 특례는 일몰되었음.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총수입금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납세협력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전 송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였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세액공제 대상(시행일 기준)]

구분		2016년	2019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2024년 7월
발급	의무 발급대상	총수입 10억원 이상 사업자	총수입 3억원 이상 사업자	총수입 2억원 이상 사업자	총수입 1억원 이상 사업자	총수입 8천만원 이상 사업자
		신설 (일몰: 2018년)	-	재도입 (일몰: 2024년)		
세액 공제	공제여부	신설 (일몰: 2018년)	-	재도입 (일몰: 2024년)		
	공제한도	100만원	-	1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	총수입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제액	건당 200원	-	건당 200원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단기적으로는 전자계산서 발급 수단

을 마련하거나 변경된 전자계산서 발급 방식⁸⁷⁾에 적응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므로, 개정안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또한, 동 특례를 통해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복잡·다양화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종이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신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과세당국은 세원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정책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보편화된 측면이 있고,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⁸⁸⁾, 조세특례의 실질적인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87)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②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③ 그 밖에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리발급 방법 등이 있음.

88) 「소득세법」 제31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10.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신영대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민전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송언석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 자녀세 액공제 (제59 조의2)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확대 및 자녀 연령제 한 폐지	□ 일반공 제 확 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1명 : <u>15만원</u>	1명 : <u>30만원</u>	1명 : <u>50만원</u>	1명 : <u>30만원</u>	1명 : <u>30만원</u>	1명 : <u>35만원</u>	1명 : <u>25만원</u>	1명 : <u>30만원</u>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2명 : <u>35만원</u>	2명 : <u>70만원</u>	2명 : <u>100만원</u>		2명 : <u>65만원</u>	2명 : <u>75만원</u>	2명 : <u>55만원</u>	2명 : <u>60만원</u>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3명 이상: <u>35 만 원</u>	3명 이상: <u>70 만 원</u>	3명 이상: <u>100만원</u>	2명 이상: <u>30 만 원</u>	3명 이상: <u>65 만 원</u>	3명 이상: <u>75 만 원</u>	3명 이상: <u>55 만 원</u>	3명 이상: <u>60 만 원</u>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1 명 당 <u>30만원</u>	1 명 당 <u>100만원</u>	1 명 당 <u>100만원</u>	1 명 당 <u>50만원</u>	1 명 당 <u>40만원</u>	1 명 당 <u>50만원</u>	1 명 당 <u>40만원</u>	1 명 당 <u>30만원</u>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u>30만원</u>	- 첫째: <u>100만원</u>	- 첫째: <u>100만원</u>	- 첫째: <u>50만원</u>	- 첫째: <u>60만원</u>	(현행과 같 음)	(현행과 같 음)	- 첫째: <u>50만원</u>
- 둘째: <u>50만원</u>	- 둘째: <u>200만원</u>	- 둘째: <u>150만원</u>	- 둘째: <u>80만원</u>	- 둘째: <u>80만원</u>			- 둘째: <u>70만원</u>
- 셋째: <u>70만원</u>	- 셋째: <u>300만원</u>	- 셋째: <u>200만원</u>	- 셋째: <u>100만원</u>	- 셋째: <u>100만원</u>			- 셋째: <u>100만원</u>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8세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폐 지>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 신영대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80), 윤준병의원안 2024. 7. 4. 제출(의안번호 1367), 안도걸의원안 2024. 7. 22. 제출(의안번호 2058), 김민전의원안 2024 .8. 12. 제출(의안번호 2729),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송언석의원안 2024. 9. 25. 제출(의안번호 4256),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8건의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등 자녀세액 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일반공제”)하는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출산·입양공제”)하는 제도임.

□ 먼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반공제의 경우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이후 2013년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음.

또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⁸⁹⁾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세법개정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8세 이상으로 축소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일반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였음.

한편,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15년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6년 세법개정 이후부터 자녀 수 별로 차등하여 확대 지급해 오고 있음.

89)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자녀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2006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일반 공제	<u>*소득공제 방식</u>	<u>*세액공제 방식</u>					
	-자녀 2명 이내 : 총 50만원	-자녀 2명 이내 : 1명당 15만원			(좌동) *자녀연령 7세 이상 으로 한정	(좌동) *자녀연령 8세 이상 으로 한정	-1명: 15만원 -2명: <u>35만원</u> -2명 초과: 35만원+초과 1명당 30만원 <u>*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 포함</u>
	-자녀 2명 초과 : 1명당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명당 20만원	-자녀 2명 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공제	-		1명당 30만원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소기의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⁹⁰⁾이 2016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⁹¹⁾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지원 필요성

90)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91)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특히 기본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장려금, 기저귀·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합계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15만원</td><td>연 35만원</td><td>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15만원	연 35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15만원	연 35만원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단,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한도없음),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소득법 §59-4②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세 목	유 형	구 체 적 내 용	근 거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③
	자녀 장려금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 가치세	면 세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둘째, 유자녀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유자녀가구와 독신가구의 세부담 차이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 출생 및 양육에 따른 추가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득을 받는 독신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 세부담 수준)는 24.6%이고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구는 19.1%의 조세격차에 직면해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5.5%p로, OECD 평균인 9.1%p의 60%에 불과함⁹²⁾.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⁹³⁾.

92) OECD, “Taxing Wages 2024”, 2024

93) 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2022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¹⁾]

(단위: %, %p)

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조세격차 ²⁾	독신가구 조세격차 ³⁾	차이
독일	33.1	47.9	14.8
미국	19.7	29.9	10.2
프랑스	39.1	46.8	7.8
대한민국	19.1	24.6	5.5
일본	27.9	33.0	5.1
OECD 평균	25.7	34.8	9.1

주: 1) 조세격차(tax wedge)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r costs, 급여 및 고용주분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에서 ‘개인소득세+사회보험료-현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3)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정책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공제액 상향은 과세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소득수준, 가치관, 주거형태,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임.

또한, 영유아 가구의 연간 가구당 양육비용은 2018년 1,399만 2,000원에서 2022년 1,527만 6,000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⁹⁴⁾, 세제지원을

94)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2023

일부 확대하더라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의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세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가구의 연간 총 양육비용 변화]

(단위: 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양육비용	1,339	1,494	1,416	1,531	1,528
영유아 양육비용	1,116	1,117	1,038	1,106	1,082

* 위 표의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든 자녀(초등학생 이상 자녀까지 포함)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영유아 양육비용은 취학 전 영유아에 한정하여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2022

둘째, 일반공제액 확대와 관련하여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일반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녀세액 공제의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 유도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당시 상향하고자 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상이한 7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⁹⁵⁾」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상황의 심화로 인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 및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세액공제 중 일반공제의 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

95) 강훈식의원안(의안번호 3401), 박광온의원안(의안번호 10718), 고용진의원안(의안번호 16486), 서영교의원안(의안번호 18354), 박성준의원안(의안번호 19155), 진선미의원안(의안번호 24044), 신동근의원안(의안번호 24714)

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⁹⁶⁾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해당 공제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정책 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폐지하려는 윤호중의원안과 관련하여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 도입 당시,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하지 않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제한을 설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8,528억원 수준에서 2024년에는 8,245억원, 2025년에는 9,3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연도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금액	8,879	8,568	8,534	8,528	8,245	9,34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96)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문 의 처

02)6788-5154

11.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정비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제61조제2항) ☐ 아래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등 과세특례, <신 설>	☐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정비 ☐ 아래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등 과세특례, <u>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u>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개정안은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도 자녀 세액 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합산하여 그 합산한 금액이 원천징수세 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분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 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명확 히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 용방법’ 규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세액공제액 합계의 한도를 설정 하여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⁹⁷⁾.

합산되는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자녀세액공제(법 제59조의2), 연금
계좌세액공제(법 제59조의3), 특별세액공제(법 제59조의4), 정치자
금기부금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우리사주조합원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가 있음.

한편, 2023 과세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8)에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한도액 계산시 합
산되는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비점이 있음.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대
하여도 자녀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합산하여 그 합산한 금
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
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161

97)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
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
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98)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안 제119조의3) ○ (대상) 국채 및 통화 안정증권 ○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 금융회사 통한 간접 투자 ○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 방법 ① <u>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u> * 투자자별 거주자 증명서 취합·제출 ② <u>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u>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는 직접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음	☐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과 같음) ○ ○ <u>사무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u> - <u>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①&②모두)를 통해 투자시:</u> <u>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u>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 증명서만 제출 ○ <u>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u> - <u>공모·사모국외투자기구: 면제</u> * 거주자는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4. 10.28 제출(의안번호4967),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사모 및 공모펀드를 불문하고 동일한 비과세 절차를 적용하여 펀드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⁹⁹⁾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등이 포함되며,¹⁰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¹⁰¹⁾

이때 공모국외투자기구와 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모국외투자기구는 하위투자자별(실질

99) 「소득세법」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00)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귀속자별)로 비과세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²⁾ 이는 현행법령상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¹⁰³⁾와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각호¹⁰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직접 거주자증명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며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⁰⁵⁾ 사모국외투자기구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하

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제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비거주자가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
- 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03) 「소득세법」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04) 「소득세법」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1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비거주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위투자자별로 비과세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임.

한편, 현행법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공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음.¹⁰⁶⁾

사모국외펀드는 상기 규정에서 볼 수 있듯 ① 투자자별로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비과세신청을 해야하고 ②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소득지급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지 않아 투자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동 조항이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신청·원천징수 면제 특례에 관한 조항임을 고려할 때, 국채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공모·사모펀드에 동일 비과세 절차를 적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구체적으로 ①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규정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

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6) 「소득세법」 제119조의 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항제2호제가목의 특례가 적용되어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 등에 대해 직접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신청을 투자기구 단위로 시행하고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면제되는 경우, 투자기구가 투자자별 정보 취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지급자가 사모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펀드투자자의 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¹⁰⁷⁾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개정안의 규정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⁸⁾ 특히 OECD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실질귀속

10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08) 국외투자기구가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과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여야 함. 「조세조약 적용 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의 문제점」, 이경근, 2014

자로 보는 규정을 조세조약에 둘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¹⁰⁹⁾, 사모투자기구는 현실적인 운용실태를 고려할 때 각 사안별로 수익자 소유자(실질귀속자)¹¹⁰⁾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¹¹¹⁾ 둘째, 공모형¹¹²⁾과 사모형¹¹³⁾ 국외투자기구의 특성에 비추어,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상 사모국외투자기구는 비거주자별로 제출한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와 소득지급자용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모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 및 소득 지급자용 거래·보유 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같은 수준의 서류제출만을 요구하고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경우, 사모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가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을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 될 수 있음. ¹¹⁴⁾

109) OECD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에 대한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보고서

110) 「국세기본법」 제 14조, 「법인세법」 제4조,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111)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파트너십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이미현, 조세학술논문집, 2015

1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113)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4) 공모투자기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모투자기구는 투자운용제한 규정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 투자자의 보호 수준이 상이한 투자기구에 대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 제고만을 위해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13.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안 제119조의3 제6항,제7항) ☐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 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 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신청서,거주자증명서 등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4. 10.28 제출(의안번호4967),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115)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이 직접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대상자 중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

115) 「소득세법」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¹¹⁶⁾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국채등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동법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야만 했던 권익구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음.

□ 다만, 비거주자¹¹⁷⁾ 및 적격금융회사 등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현행법 및 판례 등¹¹⁸⁾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11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17)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인 비거주자

118) 대법원 2022.10.26. 선고 2020두 47937 (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와 제한세를 적용과 관련하여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경정청구권 또한 실질귀속자에게 부여하고 있음.¹¹⁹⁾ 그러나 개정안은 공모투자기구뿐만 아니라 사모투자기구 또한 모두 국내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¹²⁰⁾, 경정청구권을 비거주자에게 부여한 것은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실질귀속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현행법상 원칙에 예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

119)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20) 동 보고서 p.1,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14.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원천징수세율 (안 제129조제1항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 포츠클럽과의 계약(계약기간: 3년 이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 는 소득: 20%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 수 확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 포츠클럽과의 계약(계약기간에 상 관없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 는 소득: 20% ☐ 시행일: 2025. 1. 1.

* 정태호의원안 2024. 10.28 제출(의안번호4967),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내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3%로 규정하고 있음.¹²¹⁾ 이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의 용역 및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직업운동가의 용역 공급에 따른 소득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됨.¹²²⁾

12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1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수입금액 대비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사업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것임. 특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의 상당수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음료배달용역등 저소득자¹²³⁾여서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14년까지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제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12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세율인 20%로 원천징수되었으나¹²⁴⁾, 2015년 이후 대부분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거주자로 분류되면서¹²⁵⁾ 프로스포츠구단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3%를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

그러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국내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수취하면서도 시즌이 끝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실질적으로 징수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단기 계약(3년 이하)의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로 인상되었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계약 기간을 불문하고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인상하려는 것임. 이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세 탈루 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하였으나, 최고세율 적용대상인 고액 연봉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행위가 여전히 발생¹²⁶⁾하므로,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124)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125) 2015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거주요건이 종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126) 국제청에 따르면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출국하여 과세당국이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간 차이만큼 징수불가로 체납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2023.10.13. ‘전북현대 에두아르두 12억, 삼성라이온즈 아텔만 6억 ...탈세하고 먹튀한 스포츠 용병’ 등 언론보도 참조)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로 확보되는 세수가 확대되어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설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¹²⁷⁾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조세저항 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2018년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범위를 계약기간의 3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으로 한정하는 경우, 중도퇴출되거나 형식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일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¹²⁸⁾ 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운동지도가, 연예인, 예술가 등 다른 외국인 고소득 전문직¹²⁹⁾에 대해서도 조세 채권 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

127)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128) 2018년도 소득세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1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

차원에서 원천징수세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굳이 외국인 고소득 전문직 중 직업운동가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도 ‘비거주자 연예인등의 용역제공시 원천징수절차 특례’¹³⁰⁾와 같이 외국인 직업운동가 외에 외국인 고소득 전문직까지 원천징수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30) 「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58

15.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 축소(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납세조합 세액공제(제150조) ○ 공제대상 및 적용기한 : - 근로자: 국외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자: <u>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으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u>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공제내용 : - 근로자: 소득세액의 <u>5%</u> 공제 - 사업자: <u>소득세액의 5% 공제</u> ○ 공제한도 :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제169조) ○ 지급대상: <u>근로자 납세조합, 사업자 납세조합</u>	☐ 납세조합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등 ○ 공제대상 및 적용기한 : - 근로자: 국외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자: <u>공제제도 폐지</u> ○ 공제내용 : - 근로자: 소득세액의 <u>3%</u> 공제 - 사업자: <u>공제제도 폐지</u> ○ 공제한도 : (현행과 같음) ☐ 교부금 지급대상 축소 ○ 지급대상: <u>근로자 납세조합</u>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고,

사업자 납세조합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납세조합¹³¹⁾은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가 곤란한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¹³²⁾와 ②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사업자¹³³⁾가 각각 조직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과세관청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정부는 납세조합의 징수·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세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운영비 보조를 위해 매월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 제150조는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납세조합공제 제도(조합원 1인당 연간 한도 100만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

131)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함(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2024. 2. p. 882)

132)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원천징수의무)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단서 생략)

133)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고134),

「소득세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세액의 2%~10%를 조합에게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³⁵⁾,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월간 교부금은 징수·납부세액의 2%임(조합원 1인당 월간한도 30만원)¹³⁶⁾.

□ 납세조합 제도는 1954년 전후(戰後) 세원 파악과 세수의 적기 확보라는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

134)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135)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36)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급해야 하는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납세조합유형	월징수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매월 징수·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인력 부족 등으로 과세당국이 누락 세원의 포착이나 세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어려웠고 세무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국세징수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임¹³⁷⁾.

1961년 조합들의 활동 저조 등을 이유로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962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과세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게 되면서 기장·신고능력이 부족한 영세식육판매업자 및 외국기업 종사자 등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1년 만에 재도입되었음.

1962년 납세조합 제도 부활과 함께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할 때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납세조합 공제’도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초 공제율은 15%였으나 1965년 10%로 인하되었음.

이후 국외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세액공제율만 1974년 20%, 1996년 30%로 인상되었다가 2000년에 영세사업자와 동일한 1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¹³⁸⁾, 2018년에 근로자 납세조합과 사업자 납세조합에 대한 공제율이 5%로 일괄 인하되었음.

마지막으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음.

137)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2015. 5. 28.

138) 한국조세연구소, 납세조합의 효율적 관리개선 방안, 국세청 연구용역, 2015. 3.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개정 연혁]

구분	1962년 개정	1965년 개정	1974년 개정	1996년 개정	2000년 개정	2018년 개정	2021년 개정	개정안
근로자 납세조합	15%	10%	20%	30%	10%	5%	한도 설정 (조합원 1인당 年 100만원)	3%
사업자 납세조합			10%	10%				폐지

□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제도 역시 1962년 납세조합 제도 재도입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납부세액의 5%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다가 198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세액의 10%로 확대하였음.

이후 1981년에는 납부세액의 금액 범위를 납부세액의 5%~10% 범위로 개정하였고, 1985년에는 교부금 하한을 5%에서 2%로 축소하였으며, 2020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부금 한도를 조합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설정하였음.

[납세조합 교부금 제도 개정 연혁]

구분	1962년 개정	1980년 개정	1981년 개정	1985년 개정	2020년 개정	개정안
근로자 납세조합	5%	10%	5%~10%	2%~10%	한도 설정 (조합원 1인당 月 30만원)	1%~10%
사업자 납세조합						폐지

- 2022년 기준 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신고자의 경우 1만 8,814명에 대해 총 33억 2,500만원의 세액이, 종합소득 신고자에 대해서는 6,964명에 대해 총 8억 5,000만원의 세액이 각각 공제되었음.

[2022년 기준 납세조합 공제 현황]

구분	인원	공제액	조합원 1인당 평균공제액
근로소득 신고자	34,412명	33억 2,500만원	10만원
종합소득 신고자	6,964명	8억 5,000만원	12만원

자료 : 국세청, 「2022년도 국세통계연보」

- 개정안은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고 사업자 납세조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급을 중지하려는 것임.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법인 등은 원천징수¹³⁹⁾ 및 자료제출¹⁴⁰⁾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 외국법인 등에 고용된 고

139)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140)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액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포착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해서는 신고 유도 등을 위해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급 제도를 유지하되 그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고,

사업자 납세조합은 소득세 납부 편의상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합 제도는 유지하되 과세인프라 구축 고도화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급을 중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음.

첫째, 국가의 징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납세조합 제도는 현대 조세국가의 세정제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¹⁴¹⁾ 공제한도액 설정 등을 통한 제도의 축소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과거 납세조합 제도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 1947년에 국가의 징세권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미국이나 EU 국가에는 납세조합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조합 제도가 60여년 전 과세역량 부족 및 조세행정 편의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지속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 및 과표 양성화 노력에 따라 외국기업 종사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과약 여건이 조성되어 그 존속 필요성이 과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141) 한국조세연구소, 납세조합의 효율적 관리개선 방안, 국세청 연구용역, 2015. 3.

거에 비해 낮아졌으므로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세금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133개 세무서에 21,381명¹⁴²⁾의 세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세액 공제율의 점진적 축소, 교부금 한도 신설, 공제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등을 추진해왔으며, 납세조합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및 교부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국세청은 납세조합 운영지원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둘째, 고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 인하를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현재 근로자 납세조합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기준으로 국외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조합원 34,412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살펴보면¹⁴³⁾,

142) 2024년 9월 기준

143) 노점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분위별 자료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비율이 19%로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근로자 납세조합 전체의 공제액 33억원의 73%인 24억원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근로자 납세조합의 급여구간별 공제현황]

구분	인원	전체인원 대비 비율	공제액	전체공제액 대비 비율
5천만원 이하	18,814명	54.7%	2억원	6%
5천만원 ~ 1억원	8,934명	26.0%	7억원	21%
1억원 초과	6,664명	19.3%	24억원	73%
(10억원초과)	(50명)	(0.1%)	(4,600만원)	(1%)
계	34,412명	100%	33억원	100%

자료 : 국세청, 「2022년도 국세통계연보」

셋째, 과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따라 사업자 납세조합을 통한 납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사업자 납세조합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과거 대비 감소하였음.

사업자 납세조합은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¹⁴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의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면서 조합 및 조합원 수는 물론이고 납세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¹⁴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당시 사업자 납세조합 제도의 납부세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납세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하거나 제도 유지 필요성에

144) 2008년 130개 → 2019년 59개 → 2023년 20개

대해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국세청은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사업자조합의 교부금 지급 폐지를 포함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1962년 납세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과세 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 국세청은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안내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등 다양한 납세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조합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세제지원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납세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폐지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가 소득을 은폐·축소하는 등 납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을 수 있고, 조합원의 조합 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 세무조사 등 별도의 인력과 비용 투입 없이는 정확한 급여나 비용처리금액 등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수단이 부족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 징수 및 세원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비용 증가 등 징세비용 지출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 납세조합의 경우 지급한 법정교부금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억 5,000만원인 반면 징수한 세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납세조합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세원관리 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납세조합 교부금 및 징수세액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34억원	28억원	23억원	28억원
	징수세액	1,769억원	1,484억원	1,244억원	1,499억원
사업자 납세조합	교부금	9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70만원
	징수세액	4억원	4억원	3억원	3억 7,000만원

자료 : 국세청

문 의 처

02)6788-5154

1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정부안
☐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의무 (안 제156조의2 제1항)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제출 ○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u>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u>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4. 10.28 제출(의안번호4967),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의무를 부과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원천소득 중 ①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②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청의무를 면제하고 있음.¹⁴⁵⁾

¹⁴⁵⁾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을 면제할 이유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세특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 및 소득 구분 등의 오류로 과세 누락이 발생하는 등 세원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특히 인적용역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체류기간, 금액 등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은 이에 비과세 요건, 소득 구분 등 오류¹⁴⁶⁾로 과세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원천징수의 적정여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¹⁴⁷⁾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 조세

146) 조세조약상 국내과세권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임에도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하거나, 사용료 소득임에도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147)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5조제2항

조약 상 국내과세권이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 필요성이 낮기 때문임.

문 의 처

02)6788-5158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제160조의3)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의무 - 대상: 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은 제외)을 발급하는 자 - 보관기간: 5년 ☐ <신 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및 기한 신설 ☐ (현행과 같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3억원 이상으로서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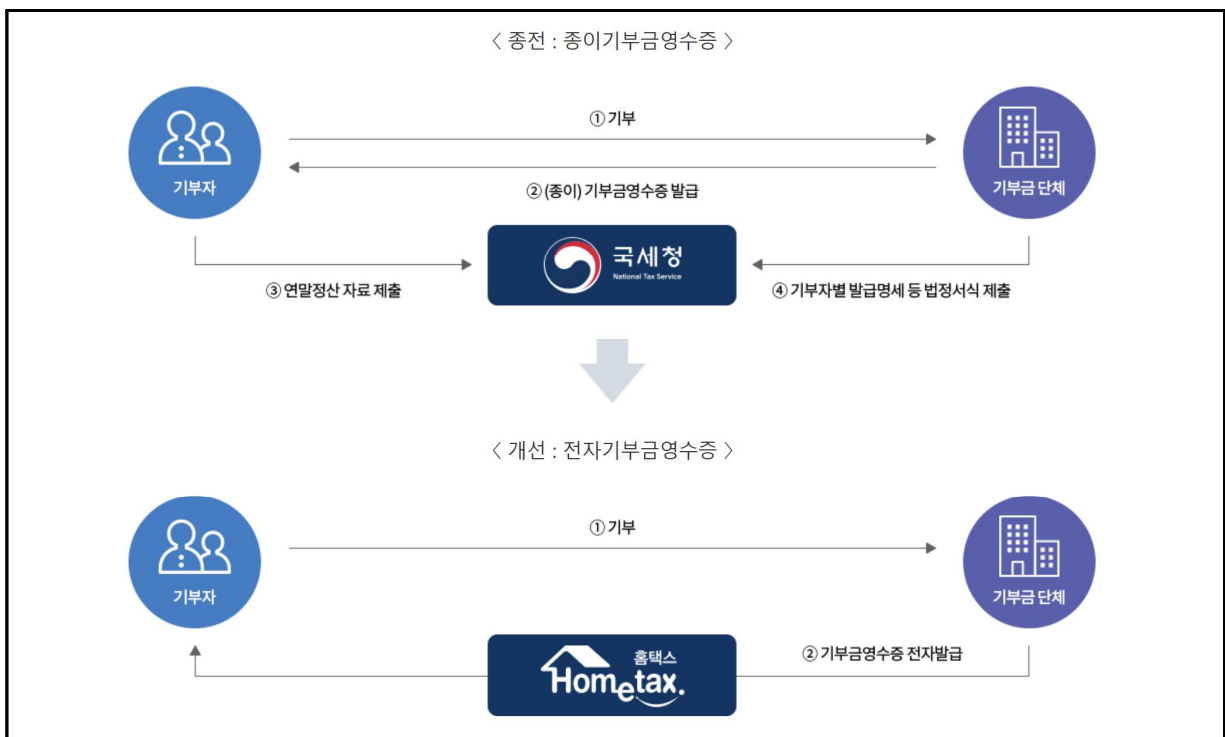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 및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이 면제됨.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는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해야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반면,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함.

[종이기부금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관리 과정]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발급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기부자가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줄어들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늘어남으로써 기부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를 늘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참고로,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포함됨.

- 다만, 개정안은 기부금단체에 대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적용대상인 기부금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7조의2) ☐ 이월과세 요건 충족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금액 적용 - 토지·건물·부동산 취득관련 권리(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 증여일 10년 이내 양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내 사업인정고사·협의매수 수용 ·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 (이월과세 미적용 세액) > (이월과세 적용 세액) ☐ 거주자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 <u>적용대상 자산 추가</u> - <u>주식등*</u> 추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에택증권 포함) - (현행과 같음) - <u>주식등의 경우 1년</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개정안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특수관계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이월과세)되는 대상 자산에 주식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액은 ①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

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③ 양도소득금액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④ 자산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⑤ 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함.

특히 이 때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실지거래가격에 따르도록 규정¹⁴⁸⁾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매수, 수용 등 특정 상황¹⁴⁹⁾이 아니라면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 거주자(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적용(“이월과세”)¹⁵⁰⁾하고,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해당

148)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격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격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149)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3.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보다 적은 경우

150)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¹⁵¹⁾하며, 이 때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이러한 이월과세 제도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시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부풀려 산정(Step-up)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줄이는 부당행위¹⁵²⁾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¹⁵³⁾

□ 그런데,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등)¹⁵⁴⁾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5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52) 예를 들어 A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직접 제3자인 C에게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A의) 양도차익은 8억원(= 10억원 - 2억원)이 되지만, A가 동 주택을 배우자인 B에게 6억원에 증여하고, B가 이를 제3자인 C에게 10억원에 양도하며 이 같은 양도행위가 부당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B의) 양도차익은 4억원(= 10억원 - 6억원)이 되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153) 참고로 미국·일본·독일 등은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기한이 없음(무기한 적용)

1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9,9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지방세 미포함)이 발생하는데,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다면,¹⁵⁵⁾ 증여세는 0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되며, 배우자의 주식 양도차익도 0원(양도가액 6억원 - 취득가액 6억원¹⁵⁶⁾)이 되어 해외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9,950만원을 회피할 수 있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주식 등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 등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상향시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의 개정여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에서는 이미 주식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¹⁵⁷⁾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

155)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도 없는 것으로 가정함.

156) 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임.

157)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2025. 1. 1. 시행예정)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우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지 않게 되며, 시행이 유예될 경우 개정안의 적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일부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부동산 대비 큰 가격 변동성, 과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¹⁵⁸⁾ 등을 감안하여 주식 등의 이월과세 기간을 양도 전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산의 이월과세 기간(10년)과의 형평성, 이월과세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기간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 이월과세 적용기간]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적용대상	특수관계자간 증여	제한 없음	배우자 간 증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적용기간	10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영국은 부동산등 증여 시 증여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에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 시 이월과세함

*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57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158) 1998년부터 10년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는데, 장기보유기간을 2001년~2008년에는 1년, 나머지 기간에는 3년으로 설정하였음.

2.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양도차익의 산정 (제100조)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기준시가 → 취득가액 기준시가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 (원칙) 각각 구분 기장 - (예외) 다음의 경우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불분명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u>(신 설)</u>	□ <u>안분계산 예외 신설</u> ○ (현행과 같음) ○ <u>(안분계산 예외 신설)</u> · <u>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u> ① <u>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u> ②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u>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7),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 2건의 개정안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안분계산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¹⁵⁹⁾

또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② 구분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됨.¹⁶⁰⁾¹⁶¹⁾

위와 같은 안분계산 방식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환산가액¹⁶²⁾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임의로 구분 기재하여 고의로 양도차익

159)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160)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161)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닌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20두42798, 2020.11.5.).

162)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거의 취득가액을 현재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함(「소득세법」 제69조제5항).

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법정안분계산 산식]

$$\frac{(\text{계약서상 구분 기장된 가액} - \text{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text{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 \times 100\% \geq 30\%$$

[법정안분계산 사례]

- 매매가액 10억원의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A 구분기재: 건물 3억, 토지 7억
- B 구분기재: 건물 2.5억, 토지 7.5억

구분	기준시가	구분기재없는 경우 (기준시가 안분금액)	구분기재한 경우	
			A	B
건물	1억	2억	2억	2.5억
토지	4억	8억	8억	7.5억

- ※ A의 경우 건물 3억, 토지 7억으로 구분기재하였으나 건물 기준시가금액의 30%를 초과 [(3억-2억)/2억=50%≥30%]하였으므로 건물가액을 3억원으로 구분기재한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건물 2억과 토지 8억이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액이 됨.
- B의 경우 건물가액을 2.5억으로 기재하여 1.4억(기준시가안분가액 2억의 70%)과 2.6억(기준시가안분가액 2억의 130%) 범위 안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¹⁶³⁾

163) 일반적으로 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대형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사업자가 양도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과 같은 이유에서 안분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⑧ 생략)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달리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②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¹⁶⁴⁾

이는 법령에 정하는 가액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의 예외사유를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164) 일반적으로 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대형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사업자가 양도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소득세법」과 같은 이유에서 안분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⑧ 생략)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생략)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사유 모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 ----- -----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u>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u> <u>나.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u>

문 의 처

02)6788-5157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현 행	개정안
☐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등	☐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 유지

* 박대출의원안 2024. 6. 12. 발의(의안번호 389, 42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3522)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제는 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그 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2단계 누진세율(3억원까지는 20%, 3억원 이상은 25%)로 분류과세하고,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며, ②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구분을 재분류(이자·배당·금융투자 등 원천에 따른 분배금, 환매·양도소득 등)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상응하여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을 입법안에 반영한 것임.

정부는 금융 과세는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의 국가 간·자산 간 이동성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상생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⁶⁵⁾

[개정안이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조	주요 내용
제4조	○ 금융투자소득의 신설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신설
제16조 ~ 제17조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과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변경함
제87조의2	○ (제1절) 정의 ‘주식등’, ‘채권등’, ‘양도’에 대한 정의 신설
제87조의3	○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익신탁의 이익,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과세함
제87조의4 ~ 제87조의5	○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기본공제 순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165)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2024. 7. 3.

조	주요 내용
제87조의6 ~ 제87조의18	○ (제4절)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포함시키고, 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제87조의19 ~ 제87조의20	○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을 2단계 누진구조(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계산방식을 규정함.
제87조의21 ~ 제87조의22	○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금융투자소득 중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정신고 대상으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 시기·절차 등을 규정함.
제87조의23 ~ 제87조의24	○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의무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확정신고 납부 시기·절차 등을 규정함
제87조의25 ~ 제87조의27	○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미신고·탈루·오류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납하거나 초과납부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환급할 수 있도록 함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 제105조, 제114조	○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주식등의 양도소득 및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기준시가 산정·구분계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제119조	○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관련 국내원천소득 과세방식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관련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제127조~ 제129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 제164조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을 규정함.

조	주요 내용
제174조의2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보유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방식은 현행대로 환원되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 ①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 일부 주식(대주주¹⁶⁶), 장외시장 거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 ② 집합투자기구(펀드) 환매·양도소득이나 파생결합증권 이익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 ③ 파생상품 거래·행위 소득에 대하여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 일부 상품의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 ④ 채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전면 비과세되며,
- ⑤ 파생결합사채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게 됨.

즉 2025년부터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대주주

¹⁶⁶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 제외), 채권, 주식형 ETF 등의 양도소득]이 존재하거나, 배당소득세 (집합투자기구이익, 파생결합증권이익) 또는 양도소득세(대주주 양도주식, 파생상품소득)가 혼재하여 과세되는 체계로 변경되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주요 변경사항]

연번	과세대상	내용
1	주식 양도소득	모든 주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 일부 주식 양도소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
2	집합투자기구(펀드) 환매·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3	파생상품 거래·행위 소득	모든 파생상품 거래·행위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일부 파생상품 거래·행위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4	채권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 비과세
5	파생결합증권 이익	금융투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6	파생결합사채 이익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참고로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세율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증권거래세율(「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코스피 ¹⁶⁷⁾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167)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0.15% 부과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과세체계 비교]

[현 행]	[2025년 이후]
이자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 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좌 동)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배당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배당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좌 동)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10~30%) •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10%) •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10%)	금융투자소득(20%, 25%) • 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 채권 양도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 파생상품 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소득 •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 한편,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⁶⁸⁾.

첫째, 미국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 자산(capital assets)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7단계로 누진과세(10~37%)하되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자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단계 분리과세(0%, 15%, 20%)하고, 장단기 양도손익간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음.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배금은 그 원천 및 종류에 따라 구분과세하고 지분양도 자본손익에 대하여는 자본자산 손익과 동일하게 취급함.

둘째,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단순화 및 통합화 작업을 거쳤음.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① 상장주식·채권·펀드, ② 비상장주식, ③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음. ① 상장주식·채권·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②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③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잡소득으로 구분하되, 이자소득세율·배당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하여 조세중립성을 높였음.

168)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2020.6. 참조.

펀드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펀드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세(공사채 투자신탁)와 배당소득세(주식투자신탁)를 과세하고, 펀드의 환매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펀드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자본이득세로 분류과세하고 있으며, 모든 자본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종합소득과 자본이득의 합계액 규모에 따라 10%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독일의 경우 자본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과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자본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손익 간 상계만 가능함.

참고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비과세되고 있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해외 과세현황]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개괄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양도가능자산	주식, 채권 및 증서로부터의 양도소득	주식과 금융상품으로 부터의 양도소득*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채권	과세	과세	비과세 (적격회사채, 영국정부채 등)	과세	과세	과세
파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펀드	분배금:소득원천별 과세 매매이익:자본이득 과세	분배금:이자·배당소득 과세 매매·환매이익: 양도소득 과세	분배금:이자·배당소득 과세 매매·환매이익: 자본이득 과세	직접투자과 동일 과세	공모펀드: 자본투자소득 과세 특수투자펀드: 소득원천별 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주요국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구 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과세체계	단기보유 종합과세 장기보유 분리과세 가능	분류과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과세대상	모든 자본자산 (주택등 개인용도자산, 주식 등 투자자산)의 양도소득	주거용 부동산과 주식 등 그 외 자산으로 구분	상장주식 및 일반주식으로 구분	주식, 채권, 증권 양도차익, 파생거래, 공매도 이익 등
기본공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47,025~94,050달러	연간 면제금액 6,000파운드 적용	없음	저축자 일괄공제 (1인당 801, 부부합산 1,602유로)
손익통산	모든 자산 적용, 순손실 이월공제	모든 자본소득 간, 순손실 이월공제	상장·일반주식 각각 적용(배당소득 등 포함), 이월공제	주식은 주식양도손익 내 적용, 순손실 이월공제
세율	단기보유(종합, 10~37%) 장기보유(분리, 15~20%)	종합소득·자본이득 합계액 기준 10% 또는 20%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	분리과세 25% 연대세 5.5%, 교회세 8~9%
거래세	연방 거래세 없음 (뉴욕주는 과세)	인지세(0.5%) 과세	없음	없음

* 자료: 예산정책처 제공

[각국의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비교]

국가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한국	과세(0.18%)	과세(대주주)
미국	비과세	과세
영국	과세(인지세)	과세
프랑스	과세(0.3%)	과세
이탈리아	과세(0.2%)	과세
독일	비과세	과세
일본	비과세	과세
중국	과세(0.1%)	비과세
대만	과세(0.15%)	비과세
홍콩	과세(0.1%)	비과세
싱가포르	과세(0.2%)	비과세
호주	과세(인지세)	과세
뉴질랜드	비과세	비과세

*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사례」

□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고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과세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2020년 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분석·추정한 내역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10배(1.5만명 → 15만명), 과세규모는 연간 약 1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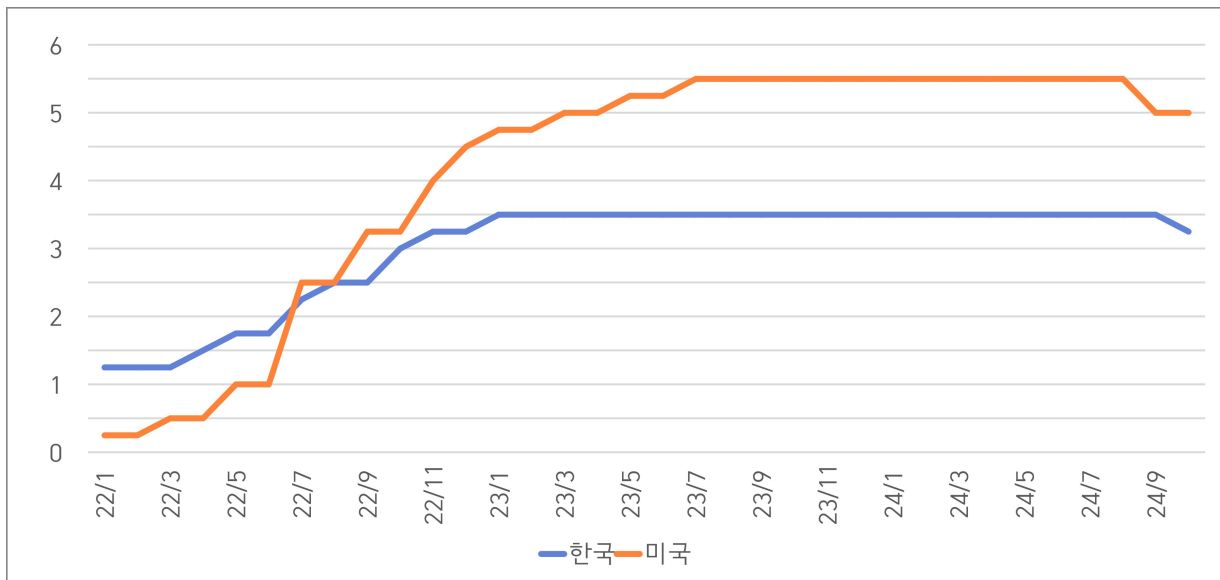
169) 다만, 예산정책처는 9개 증권사의 국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거래결과를 자료를 활용하여 세규모가 연간 약 1조 1,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규모가 약 1,442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¹⁷⁰⁾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를 약간 초과하는 규모긴 하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로 인해 이들이 해외증시 등으로 이탈하여 증시가 침체될 경우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임.

둘째,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특히 한미간 금리역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해외주식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임.

[한-미 금리 변화 추이]



* 자료: 한국은행

170)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미국주식투자 매수건수 및 매수금액]

년도	매수건수(건)	매수금액(100만 USD)
2014	50,186	2,574
2015	100,803	3,793
2016	148,544	3,695
2017	257,377	7,096
2018	400,830	11,751
2019	815,699	16,636
2020	2,620,790	97,958
2021	4,716,020	195,419
2022	4,787,540	147,830
2023	5,691,489	135,190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셋째, 한국 증시는 외국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다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철회하여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임¹⁷¹⁾.

위와 같은 두 주장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자본의 해외유출, 투자심리 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임.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우리나라 가계자산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게 됨.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2021년 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비금융자산(%)	64.4	28.5	37.0	46.2	61.2
금융자산(%)	35.6	71.5	63.0	53.8	38.8

* 자료: 금융투자협회

171) 2024.11.1. 기준 나스닥 PER 31.82 PBR 3.93, S&P500 PER 24.49 PBR 5.03 코스피 PER 14.29 PBR 0.89

□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임. 현행 과세체계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이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또한,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같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둘째,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임.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순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손실액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소액 주식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철회는 수직적 형평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셋째,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공백 문제,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한 투자 의사결정 왜곡 문제 등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보완하려던 현행 금융세제 상의 여러 문제¹⁷²⁾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임.

172) 구체적으로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이 제외되어 집합투자 기구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거나,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입과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의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넷째,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회계의 불투명성·낮은 주주환원율 등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와는 별개로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제도의 완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우리나라 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차익 과세체계 차이¹⁷³⁾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투자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시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일지 모르나, 한국증시의 투자 매력도 확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임¹⁷⁴⁾.

□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찬·반 논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철회되고 이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방침은 유지될 경우 조세기반이 과도하게 잠식되어 세수중립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는 증가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의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

173)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데 반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174) 최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보다 정부가 이달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시가총액·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구성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가 크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철회한다면 증권거래세 또한 과거로 환원하여 과세기반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⁷⁵⁾.

또한, 만약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간 도입을 유예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 또는 기본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제도의 대원칙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7

175)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연간 약 1조 6천억원의 세수 증가를(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당시 정부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연간 약 2조 5천억원(2025년 기준)의 세수 감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음.

[기타 참고사항]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 경과

1. 도입 배경(2020년 말)

- 2020년 정기회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함으로써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축소 및 금융세제 정비를 통해 조세의 합리성, 투자중립성 및 형평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이는 2019년 정기회에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16호)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국회에 제출한('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결과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의견(2019.11.)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당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의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으

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각 상품 유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주식등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예적금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양도차익 및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③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④ 국내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되며, 일부 대주주·상장주식장외거래·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⑤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다만, 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②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채권 양도소득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는 ① 일부 금융투자소득이 비과세되고, ②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소득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어,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여부 등이 달라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개인

의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¹⁷⁶⁾하며, ③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을 허용하지 않아 다른 금융상품의 손실 여부 또는 전년 금융투자 손실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음.

2. 제도 완비를 위한 정비(2021년 말)

-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정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미흡하였던 점 등을 보완하고자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함.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과 보유내역을 세무서장의 요청 없이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고 5년간 이를 보유하도록 하며,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176) 예를 들어 현행 「소득세법」 체제 하에서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비과세), 개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원천징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징수하도록 하는 것 등임.

3. 제도 유예 및 추가 정비(2022년 말)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당시 ①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②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¹⁷⁷⁾가 있고, ③ 개인투자자 보호장치¹⁷⁸⁾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법안 제출의 이유로 제시하였음.

정부는 이와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을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

177) 이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자본이득세)의 도입은 “자본화 효과”와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을 낮추는 자본화효과는 자본이득세율의 변화 이전에, 가격을 높이는 동결효과는 변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갑래, 김준석,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2014)

*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s): 주식 매수자는 미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므로,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수요곡선을 하향 이동시켜 주가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함.

* 동결효과(Locked-in effects): 주식매도자는 자본이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므로,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공급곡선을 상향이동시켜 주가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함.

* 자본화 효과는 미래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발생하고 동결효과는 자본이득의 실현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 효과의 작용시점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78)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가 아닌 배당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¹⁷⁹⁾, 구분되어 운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소득의 예정신고 기한을 일원화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사항을 함께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당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임.

문 의 처

02)6788-5157

179)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당시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가 받는 소득을 그 성격 및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인한 소득” 및 “집합투자기구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분배(투자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분배금)”받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으로, “집합투자기구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분배(투자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분배금)”받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았음. 그러나 국내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등 납세를 위해 기준가, 배당기준가, 금융투자소득세기준가를 구분하여 매일 관리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과세 구현이 곤란하여 금융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자도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세로 일원화함.